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준형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
----------	-----

발의년월일 : 2018년 10월 17일

발 의 자 : 이준형, 문병훈, 이호대,
이세열, 박기재, 김제리,
오중석, 한기영, 이현찬,
오현정, 오한아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시가 투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대해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를 규정하는 것은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관할하는 공사·공단의 경우 임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투자·출연 기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서울시가 투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 등의 임기는 책임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공기업법」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타 :

- 1) 신·구조문대비표 :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p> <p><u>②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제9조(임원의 임면 등) ① (현행과 같음)</p> <p><u>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u></p>